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법인
삼 계 원

창원삼계요양원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 1 조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2 조 (입소 정원) 입소정원은 29명으로 한다.

제 3 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시설 홍보물 배포 및 블로그
- 2) 가족의 자발적 의뢰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입소계약) 입소계약서는 [별표 5]와 같다.

제 2 조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제 3 조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4 조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2025년 1월 변경 기준)

※ 단 월이용한도는 매년 수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 질수 있고, 달라진 내역은 첨부 한다.

※ 비급여는 조정가능하다.(보호자의 경제 상황등 고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	시설 급여
시설 급여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개정 법)	90,450	83,910	79,240	일반	20%
	상급침실이용료			0	기초수급권 자	0%
비 급 여	식재료비(월)			270,000	기타의료수 급권자	12%
	간식비(1회)			0	감경대상자	8%
	이/미용료등			0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 원등급	구분	재가 급여
재가 급여	노인전문요양시 설(구 노인복지 법) 노인요양시설 (개정법)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일반	15%
								감 경 대 상자	9%
								기타의료 수급권자	6%

1. 이용료 납부방법은 통장입금, 현금수납, 카드결제로 한다.

2. 매년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시하는 수가 변동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이 오르는 경우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급여계획 변경 기록을 한다.

제 5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 외박에 관한 권리
-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공 설비 및 비품, 집기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 조 (서비스의 내용) 시설에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상담 및 대상자 관리 서비스
2. 급식 서비스
3. 보건·의료 서비스
4. 정서기능 회복 서비스
5. 대상자 이송 서비스
6. 기초생활지도·건강관리 및 운동지도·신앙생활지원 서비스
7. 여가생활지원 서비스
8. 특별행사(명절·생일) 서비스

제 2조 (서비스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④ 입소자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의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⑥ 입소자의 건강 및신상에 대한 이유로 시설측에서 요청이 있을시 그 요청에 응할 의무

제 3조 (보호자의 권리)

- ① 보호자는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여부와 내용에 대해 시설에 확인할 권리가 있다.
- ② 보호자는 입소자의 건강 및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시설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보호자는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④ 보호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입소자의 대리인 권리를 가진다.

- ⑤ 보호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입소자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 4조 (비용의 부담) 이용료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특별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 1 조 (특별보호 기준) 입소어르신인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제 2 조 (신체구속)

1.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3. 신체구속(제한)은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을 시에만 실시하되, 절박성, 비대체성, 불가피한 일시성에 근거하여 필요시에만 실시할 수 있다.
- *아래사항이 발생 시 보호자 사전 동의한 어르신께 신체제한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 시 관리대장에 상황 및 사유, 내용, 제한 시간 등을 기록하고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보 및 확인토록 한다. 단 제한 1회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해 당 사 항	조치방법
절 박 성	*손 또는 손톱으로 다른 입소자를 가격할 위험에 대비 *손 또는 손톱으로 본인을 자해할 위험에 대비	손보호대착용
비대체성	*침대사용 중 어르신 1차 안전용 쿠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상의 위험이 지대한 경우	손장갑 착용
일 시 성	*tic 증상으로 신체중 동일부위에 상처가 발생할 경우 *전염성질환 발생으로 공동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치료를 위하여 신체구속(제한)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의사,보호자 의견반영)	손지지대 사용 1인실격리생활동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별도 비용은 없다.

제 2 조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 (산소공급, 잦은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

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다. 침실 이용료는 추가 되지 아니한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6. 의료 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1 조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 2 조 (협약 의료기관)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촉탁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제 3 조 (병원진료)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 4 조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